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07
----------	-------

발의연월일 : 2025. 6. 26.

발 의 자 : 박상웅 · 윤한홍 · 서일준
유용원 · 김미애 · 박덕흠
박정하 · 김위상 · 박준태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재해대책 마련시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

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을 “호우(豪雨), 지진, 해일, 태풍, 강풍”으로,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병해충(病害蟲)”으로, “그 밖에”를 “그 밖에 이상고온(異常高溫), 이상저온(異常低溫), 일조량(日照量) 부족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u>호우(豪雨)</u> , 해일, 태풍, <u>강풍</u> , <u>이상저온(異常低溫)</u> ,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병해충(病害蟲)</u> , <u>일조량(日照量)</u>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u>그</u>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호우(豪雨)</u> , 지진, 해일, 태풍, <u>강풍</u> ----- ----- ----- ----- <u>병해충(病害蟲)</u> ----- ----- ----- ----- <u>그</u> 밖에 <u>이상고온(異常高溫)</u> , <u>이상저온(異常低溫)</u> , <u>일조량(日照量)</u> 부족 등----- ----- ----- ----- ----- -----.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제3조(재해대책) ① -----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후단 신설>

1. ~ 5. (생략)

<신설>

<신설>

-----.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
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
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의2(재해발생 긴급 실태조
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
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한다.